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2099
------	------

2021.3.3.
기획경제위원회

I 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년 1월 4일, 김인제 의원(찬성의원 60명)

나. 회부일자 : 2021년 1월 21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99회 임시회】

-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(2021.3.3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
및 답변, 의결(수정안가결)

II . 제안설명의 요지(김인제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산업·경제 분야 침체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음.

-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따라 서울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소상공인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나. 소상공인 지원 및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.
- 다.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, 안 제9조).
- 라.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과 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, 안 제11조).
- 마.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과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, 안 제13조).

Ⅲ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제정안의 개요

- 제정안은 「소상공인기본법」의 제정·시행(2021.2.5.)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, 소상공인의 지원·육성 및 보호, 재정지원과 조세감면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음.

나. 「소상공인기본법」의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

-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여러 개별법들¹⁾이 시행되고 있지만, 소상공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자영업까지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소상공인을 총괄할 수 있는 기본법 제정이 요구되어 왔음.
- 이에 국회는 2020년 2월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인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,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, 지속성을 담보하는 「소상공인기본법」(이하 “기본법”)을 제정하였음.

1)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, 「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,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등이 있음.

- ‘기본법’은 총칙,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체계,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, 소상공인 보호 시책, 소상공인 시책의 기반조성, 보칙 등 총 6개의 장(총 37개 조문)으로 구성되어 있음.

< 소상공인기본법 규정 체계 >

총칙 (제1장)	목적(§1), 정의(§2), 책무(§3·§4), 다른 법률과의 관계(§5), 소상공인 주간(§6)
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체계 (제2장)	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시행(§7·§8),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(§9), 소상공인정책심의회(§10)
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 (제3장)	창업촉진 및 성장(§11), 인력 확보 지원(§12), 직무능력 향상 지원(§13), 판로 확보(§14), 디지털화 지원(§15), 혁신 촉진(§16), 사업장 환경 개선(§17), 국제화 촉진(§18),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(§19), 업종별 지원(§20), 상권 등 집적지역 지원(§21), 구조 고도화 지원(§22)
소상공인 보호 시책 (제4장)	경영안정 지원(§23),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(§24), 폐업 및 재기 지원(§25), 공제제도 확립(§26), 공정경쟁 및 상생 협력 촉진(§27), 사업영역 보호(§28), 재난피해 지원(§29), 고용보험료 지원(§30), 조세 감면(§31)
소상공인시책의 기반조성 (제5장)	전문연구평가기관 설치(§32), 중소기업 옴부즈만 특례(§33), 소상공인 단체 결성(§34), 지원기관 설치(§35)
보칙 (제6장)	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(§36), 과태료(§37)

- 이에 따라 ‘기본법’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방향 설정과 함께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할 정책분야와 내용을 규정하고,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개별 사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두 법률의 관계와 내용을 재정립 하였음.

다. 제정안의 체계와 주요 내용

(1) 제정안의 필요성과 체계

- 소상공인은 업종이 다양하고 매출규모 편차가 심한 특성을 갖고 있어 전체 소상공인을 아우르는 법·제도적 지원 체계가 요구되나, 그 동안 필요에 따라 소상공인별로 개별법령과 조례를 통해 임시처방 식으로 지원이 실시되었음.
- 소상공인 지원 조례로 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두고 있음.

< 소상공인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 >

조례명	주요내용
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	·적용대상 : 소상공인 ·규정내용 : 소상공인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경영 및 창업지원,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,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, 영세 소상공인 공제 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, 재난지원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	·적용대상 : 전통시장 상인 ·규정내용 : 상권활성화, 시설현대화, 경영현대화 등 지원 상인교육, 사용료 등 감면, 빈점포 활용 지원, 주차요금 감면, 우선구매, 카드 수수료 지원
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	·적용대상 : 대형유통기업,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·규정내용 : 상생협력계획의 수립·시행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

관한 조례	상생협력 촉진 지원, 영업시간 등의 제한
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	·적용대상 : 도시형제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·규정내용 : 도시형소공인 지원 계획의 수립 인력 양성 및 확보,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, 기술전수 지원,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, 집적지구 금융지원, 인프라 구축

-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개별조례를 아우르는 기본조례안이 제정될 필요성이 있음.
- 다만, 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을 총괄하는 기본법규임에도 소상공인 지원과 보호·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망라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조례들과 상충되지 않도록 제정안 외에 다른 조례의 규정들도 함께 병행 검토가 필요함.
- 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입법 취지와 내용이 제정안과 유사해 두 조례 간에 관계 재설정과 보완이 불가피한데, 이는 제정안 부칙에서 해당 조례를 정비하면서 해소하였음.²⁾

2) ‘기본법’ 제정시에도 법체계적 통일성 확보를 위해 부칙으로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(제3조), 소상공인의 날(제4조),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(제6조), 실태조사(제7조), 재해 및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 지원(제12조의2), 소상공인의 협력 및 단체 결성(제16조) 등 다수의 규정을 삭제한 바가 있음.

- 제정안을 ‘기본법’의 체계에 따라 구분하면, 총칙,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,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, 소상공인 보호 시책, 지원기반 조성으로 나눌 수 있음.

< 소상공인기본조례안의 규정 체계 >

총칙	목적(§1), 정의(§2), 책무(§3·§4), 다른 조례와의 관계(§5)
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·시행	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·시행(§6),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(§7)
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	- 사업장 환경개선 : §8① - 창업촉진 및 성장(1), 인력 확보 지원(2), 직무능력 향상 지원(3), 판로 확보(4), 디지털화 지원(5), 혁신 촉진(6), 국제화 촉진(7), 협업조직 지원(8), 업종별 지원(9), 집적지역 지원(10), 구조 고도화 지원(11) : §8②
소상공인 보호 시책	- 복지수준 향상(1),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촉진(2), 사업영역 보호(3) : §9① - 경영안정 지원(1), 폐업 및 재기 지원(2), 공제제도 확립(3), 재난피해 지원(4) : §9② - 고용보험료 지원(§10), 조세 감면(§11)
지원 기반조성	소상공인 단체 지원(§12), 지원기관 설치(§13)

(2) 총칙(안 제1조~안 제5조)

- 안 제1조는 소상공인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는 제정안의 목적을 명시하고, 안 제2조는 소상공인의 정의를 ‘기본법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‘기본법’ 제2조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소상공인 정의(제2조)를 동일하게 규정해 자산총액, 업종별 매출액, 상시 근로자 수가 대통령령을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소상공인의 요건으로 하고 있음.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 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-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
○ “소상공인” 을 관계법령에 부합하게 정의해서 문제는 없으나, 자치법규는 지역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서울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적용범위를 한정시킬 필요가 있음.

- 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(제3조)³⁾,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지급 혼선의 문제⁴⁾로 행정안전부는 조례의 지원대상을 사업장을 둔 경우로 한정하길 요청한 바가 있음 [붙임자료1 참조].

3) 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(이하 "시" 한다)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.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.

4) A, B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대상을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규정하는 경우 A 지자체에 거주하면서 B 지자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은 두 지자체에서 모두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음.

- 한편,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시장과 소상공인의 책무를 각각 부여하고 있는데 시장의 책무로는 서울시의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보호·육성 시책의 추진과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, 상호 협력과 시책 연계를 통한 지원의 효과성을 두었음(안 제3조).
- 소상공인의 책무는 자주적 노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함께 투명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 수행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, 서울시의 시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 협력 강화를 규정하였음 (안 제4조)
- 이는 ‘기본법’ 을 참고해 시장과 소상공인이 담당해야 할 책무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이 보호·지원의 대상이자,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, 소상공인의 협력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등 소상공인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있음.
- 안 제5조는 소상공인의 보호·육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·개정 하는 경우 제정안의 목적에 맞도록 하고 소상공인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정안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이는 제정안이 소상공인 육성과 보호에 관한 기본법규의 지위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, 다른 조례와의 입법적 체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임.

- 다만,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이념에 맞도록 다른 조례를 제·개정하도록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법령 해석상 다른 조례와의 저촉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(법제처,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)

(3)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·시행(안 제6조·안 제7조)

- ‘기본법’은 소상공인의 보호·육성을 위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(제7조 제1항),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해 관련 예산과 함께 국회에 3월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음(제8조 제1항).
- 또한,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(제8조 제2항), 그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(제8조 제3항).
- 안 제6조는 ‘기본법’에 따라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토록 규정하는 것으로,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사항들은 ‘기본법’과 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참고하였음.

<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관련 규정 현황 >

제정안	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	기본법
제6조(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2.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3. 소상공인의 경영안정, 시설 개선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4.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.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 6.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7. 중소유통물류센터 설치 등 유통시스템 지원에 관한 사항 8. 관련 시민단체,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9.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·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	제6조(소상공인지원계획) 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<u>소상공인지원 정책의 기본방향</u> 2. <u>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</u> 3. <u>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</u> 4. <u>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</u> 5. <u>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</u> 6. <u>중소유통물류센터 설치 등 유통시스템 지원에 관한 사항</u> 7. <u>관련 시민단체,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</u> 8.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	제7조(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·시행)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2. <u>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, 전망에 관한 사항</u> 1. <u>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</u> 3.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. 소상공인 창업,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. <u>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·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

- 시행계획은 정부의 기본계획과 연동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정책적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뤄짐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시행계획의 완성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관련 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함.
- 현재 희망경제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인 풀뿌리경제 특별위원회가 대·중·소기업의 동반성장, 중소기업·중소상공인 보호·육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음.⁵⁾

- 아울러, 소상공인 정책의 투명성과 효과성, 의회의 견제 수단 확보를 위해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와 정책 환류, 의회 보고 등의 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.

- 안 제6조로 인해 삭제되는 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 제3항에서는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음.

(4)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과 보호 시책(안 제8조~안 제11조)

- 안 제8조는 ‘기본법’을 참고해 소상공인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시책들을 제1항과 제2항(제1호~제11호)에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음.

< 제정안의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(제8조) >

구분	제정안 시책	기본법	서울시 해당사업
제 1 항	사업장 환경개선	사업장 환경 개선(§17)	·전통시장 시설현대화, 주차환경개선 ·우리동네 아트테리어
제 2 항	1.창업 촉진 및 성장·발전	창업촉진 및 성장(§11)	·소상공인종합지원(창업컨설팅 및 교육, 상권혁신아카데미 등)
	2.인력 양성과 공급, 근로	인력 확보	·'20년 콜센터 작업환경개선

- 5) 「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분과위원회 등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둔다.
1.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시책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정책사항에 관하여 자문하는 산업경제 분과위원회
 2. 물가안정·소비자보호 등의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사항에 관하여 자문하는 생활경제 분과위원회
 3. 대·중·소기업의 동반성장 및 중소기업·중소상공인 보호·육성과 관련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풀뿌리경제 특별위원회

	환경 개선, 소상공인 인식 개선	지원(§12)	·서울노동아카데미
	3.소상공인 및 종사자 직무능력 향상	직무능력 향상 지원(§13)	·서울노동아카데미
	4.거래방식 현대화와 유통 기업과 협동화 등 판로 확보	판로 확보 (§14)	·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개척 ·전통시장 온라인 판로 개척 ·밤도깨비야시장 등
	5.원활한 거래 및 영업 활동 촉진을 위한 디지털화 활성화	디지털화 지원(§15)	·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·전통시장 온라인 판로개척 ·제로페이 ·서울사랑상품권
	6.창의성에 기초한 상품 개발 및 판매, 지속적인 사업장 운영 등 혁신 활동 촉진	혁신 촉진 (§16)	·소상공인종합지원(자영업협업화)
	7.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국제화 촉진	국제화 촉진(§18)	·해외시장 진출 지원 ·스타트업 글로벌 진출
	8.협업 조직 구성과 운영 합리화	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(§19)	·소상공인 단체 지원 ·소상공인종합지원(자영업협업화)
	9.업종별 특성 지원	업종별 지원(§20)	·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 활성화
	10.집적지역의 공동사업	상권 등 집적지역 지원(§21)	·소상공인종합지원(자영업협업화) ·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전환
	11.구조 고도화 지원	구조 고도화 지원(§22)	·소상공인종합지원(경영컨설팅)

- 또한, ‘기본법’ 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규정한 사항들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 각각 규정하고 있음.

< 제정안의 소상공인 보호 시책(제9조~제11조) >

구분	제정안 시책	기본법	서울시 해당사업
제 9 조	1.소상공인 복지 향상	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(§24)	·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·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·서울형 유급병가 지원
제 1 조	2.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촉진	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촉진(§27)	·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 활성화 ·가맹점 및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운영

항	3.적합 사업 영역 확보	사업영역 보호(\$28)	·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 활성화
제 9 조	1.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 등	경영안정 지원(\$23)	·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·신용보증 지원
	2.폐업 정리·취업·재창업 등 지원	폐업 및 재기 지원(\$25)	·소상공인 종합지원 (사업정리 및 재기지원)
	3.소상공인 공제지원	공제제도 확립(\$26),	·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
	4.재난 피해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및 지원	재난피해 지원(\$29)	·전통시장 안전시설물 긴급보수 ·중소기업·소상공인 풍수해 피해 지원 ·중소기업육성기금 자영업자 생존자금
제 10 조	고용보험료 지원	고용보험료 지원(\$30)	·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
제 11 조	조세감면	조세감면 (\$31)	

-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‘기본법’에 맞춰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폐업까지 교육·자금·판로·상품화·기술혁신·해외진출 등 전분야에 걸친 시책들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지원에 충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
- 다만, 대부분의 시책들이 이미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향후 소상공인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함.
- 특히, 노란우산 공제(퇴직금 마련), 고용보험 가입지원(실업급여),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(생계비) 등은 영세 소상공인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,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됨.

- 이 외에 안 제8조와 안 제9조의 시책들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입법·정책의 실행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책별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.
- 한편, 안 제11조는 ‘기본법’ 제31조를 참고해 시장이 소상공인에게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하지만, 서울시가 과세권을 갖는 세목은 지방세인 특별시세에 한정되므로 국세가 규정된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은 삭제되어야 하고, 「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」를 추가해야 할 것임.

(5) 소상공인 지원 기반 조성(안 제12조·안 제13조)

- 안 제12조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활동을 지원하며,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2014년 법정단체로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과 연합회 지회 운영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⁶⁾

- 안 제12조는 법률상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, 서울시는 매년 16개 자치구에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.⁷⁾
- 안 제13조는 ‘기본법’에 따라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서울시는 현재 소상공인 지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무를 민간위탁중이고, 재단은 ‘자영업지원센터’를 통해 수탁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센터의 설치·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로 적용될 수 있음.
- 다만, 지원기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, 소상공인의 체감도 높은 사업의 발굴과 지역적 특성에 따른 지원을 위해 자치구별로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를 고려할 수 있음.

6)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5조(연합회의 사업)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~ 9. (생략)

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2(보조금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.

7) 2021년에 소상공인회 안정화 기반 구축, 소상공인 경영역량 및 경쟁력 강화, 네트워크 강화 및 정책과제 발굴 등을 위해 7억원을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되었음.

라. 종합의견

-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은 내수경제 침체, 높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부담, 과도한 경쟁 등으로 생존 기반을 위협받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제도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조례는 지역에 한정하여 효력을 발휘하므로 그 적용대상을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여야 하며(안 제2조), 조세감면의 근거 중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을 삭제하고 「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」를 추가하여야 함(안 제11조).
- 또한,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풀뿌리경제 특별위원회에 자문을 받고,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의 평가와 정책 환류,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신설해 조례 시행의 투명성과 책임성,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(안 제6조).
- 아울러,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자영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지원기관에 대한 규정에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(안 제13조)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수정안요지

가. 수정이유

-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,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위원회 자문,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의 평가와 환류, 상임위원회 보고를 신설하는 등 일부 규정을 수정·보완하였음.

나. 수정안의 주요 내용

-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정의를 수정함(안 제2조).
-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있어 희망경제위원회의 풀뿌리 특별위원회의 자문,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의 평가와 환류·상임위원회 보고를 신설함(안 제6조).
- 소상공인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 중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을 삭제하고 「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」를 신설함(안 제11조).
-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, 지원기관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근거를 규정함(안 제13조)

VI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
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10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099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3월 3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,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위원회 자문,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의 평가와 환류, 상임위원회 보고를 신설하는 등 일부 규정을 수정·보완하였음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정의를 수정함(안 제2조).
-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있어 희망경제위원회의 풀뿌리 특별위원회의 자문,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의 평가와 환류·상임위원회 보고를 신설함(안 제6조).
- 소상공인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 중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을 삭제하고 「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」를 신설함(안 제11조).
-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, 지원기관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근거를 규정함(안 제13조)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 중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” 을 “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「소상공인기본법」” 으로 한다.

안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대해 「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의 풀뿌리 특별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-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.
- ⑤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안 제8조제2항제1호 중 “시책” 을 “시책(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창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포함한다)” 으로 하고, 같은항 제2호 중 “근로” 를 “노동” 으로 하며, 같은항 제7호 중 “활성화” 을 “활성화” 로 한다.

안 제9조제1항제3호 중 “적하한” 을 “적합한” 으로 하고, 같은조 제2항

제2호 중 “시책” 을 “시책(폐업한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한 경우에 한한다)” 으로 한다.

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조세의 감면)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「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」와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안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지원기관 등의 설치)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자치구 소상공인회와 지역 소상공인의 지원 등을 위해 자치구별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기관과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지원기관과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기관, 단체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 <u>소상공인기본법</u> 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<u>서울특별시</u> 에 <u>사업장을 둔</u> 「 <u>소상공인기본법</u> 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.
제6조(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~ ② (생략)	제6조(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~ ② (생략) (제정안과 같음)
<신설>	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대해 「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의 풀뿌리 특별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<신설>	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<신설>	⑤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2월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8조(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) ① (생략)	제8조(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) ① (제정안과 같음)
② 시장은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.	② 시장은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.
1. 소상공인의 창업 촉진 및 창업한 소상공인의 성장·발전을 위한 <u>시책</u>	1. 소상공인의 창업 촉진 및 창업한 소상공인의 성장·발전을 위한 <u>시책(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창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포함한다)</u>
2. 소상공인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, <u>근로환경</u> 개선,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시책	2. 소상공인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, <u>노동환경</u> 개선,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시책
3. ~ 6. (생략)	3. ~ 6. (제정안과 같음)
7. 소상공인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 시장 진출 <u>활성화</u> 등 국제화 촉진을 위	7. 소상공인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 시장 진출 <u>활성화</u> 등 국제화 촉진을 위

제정안	제정안
<p>한 시책</p> <p>8. ~ 11. (생략)</p> <p>제9조(소상공인 보호) ①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소상공인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절한 분야·장소·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그에 <u>적하한</u> 사업 영역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책</p> <p>②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, 취업,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<u>시책</u></p> <p>3. ~ 4. (생략)</p> <p>제11조(조세의 감면)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「<u>조세특례제한법</u>」, 「<u>지방세특례제한법</u>」,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제13조(<u>지원기관의 설치</u>)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 <p>② 시장은 <u>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</u></p>	<p>한 시책</p> <p>8. ~ 11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제9조(소상공인 보호) ①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3. 소상공인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절한 분야·장소·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그에 <u>적합한</u> 사업 영역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책</p> <p>②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, 취업,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<u>시책(폐업한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한 경우에 한한다)</u></p> <p>3. ~ 4. (생략)</p> <p>제11조(조세의 감면)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「<u>지방세특례제한법</u>」, 「<u>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</u>」와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제13조(<u>지원기관 등의 설치</u>)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<u>자치구 소상공인회와 지역 소상공인의 지원 등을 위해 자치구별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시장은 <u>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기관과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</u></p>

제정안	
<u>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	<u>업비 등을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.</u>
<신설>	④ 시장은 지원기관과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기관, 단체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·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정부의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시책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·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 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소상공인의 책무) ① 소상공인은 경영혁신 등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

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소상공인과 그 사업에 관련되는 자는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의 시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① 소상공인의 보호·육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② 소상공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시의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 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
2.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
3. 소상공인의 경영안정, 시설개선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
4.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
5.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
6.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
7. 중소유통물류센터 설치 등 유통시스템 지원에 관한 사항
8. 관련 시민단체,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·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-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대해 「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

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의 풀뿌리 특별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-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⑤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2월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실태조사 및 통계작성) ①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·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·관리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) ① 시장은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소상공인의 창업 촉진 및 창업한 소상공인의 성장·발전을 위한 시책
(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창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포함한다)
2. 소상공인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

- 공급, 노동환경 개선,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시책
3.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
 4.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거래방식의 현대화와 유통기업과 협동화 등 판로의 확보를 위한 시책
 5.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디지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
 6. 소상공인의 창의성에 기초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, 지속적인 사업장 운영 등 혁신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책
 7. 소상공인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국제화 촉진을 위한 시책
 8. 소상공인의 협업 조직의 구성과 그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시책
 9. 업종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업종에 적합한 시책
 10. 소상공인 사업장이 집적된 지역에 대해 시설, 장비, 시스템, 서비스 등 공동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
 11.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 구조고도화 지원을 위한 시책

제9조(소상공인 보호) ①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.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
2.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 및

상생협력 촉진에 필요한 시책

3. 소상공인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·장소·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그에 적합한 사업 영역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책
- ②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.
1.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시책
 2.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, 취업,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(폐업한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서울시내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)
 3.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한 지원 시책
 4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

제10조(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)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조세의 감면)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「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」와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12조(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) ① 시장은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·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지원기관 등의 설치)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자치구 소상공인회와 지역 소상공인의 지원 등을 위해 자치구 별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기관과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지원기관과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기관, 단체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사용하는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서 정한”을 ““소상공인”이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4조부터 제7조까지, 제10조 및 제10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2조 중 “조례 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조례의 시행에”로, “정할 수 있다”를 “정한다”로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”을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”으로 한다.

③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2호 중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”을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”으로 한다.

④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”을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”으로 한다.

⑤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9호 중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”를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3조”로 한다.

⑥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장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소상공인”을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”으로 한다.

⑦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가목 중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”을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”으로 한다.

⑧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”을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”으로 한다.